

#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72,891,664	35,186,750
일반회계	1,028,206,430	30,846,193
특별회계	144,685,234	4,340,557
공기업특별회계	111,463,211	3,343,89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2,022,174	1,560,665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441,037	1,783,231
기타특별회계	33,222,023	996,66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79,132	143,374
수질개선특별회계	345,063	10,352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75,455	113,2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81,500	2,445
주택사업특별회계	3,110,251	93,308
농공단지특별회계	4,394,716	131,841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81,000	2,43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576,577	107,29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8,000	1,4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52,985	79,590
도시개발특별회계	3,478,000	104,34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899,344	206,9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할 수 있다.